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1월 21일 김혜성 의원의 14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2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혜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 군인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표창, 위문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재향군인회법을 보면 재향군인회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타당한가?	○ 현재도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혜성 의원)
○ 개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면 기타 다른 단체들의 조례 제정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김혜성 의원)
○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임. (김혜성 의원)
○ 제5조에서 정한 ‘재향군인회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보는데?	○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향군인회가 하는 일에 대한 교육사업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내용임.(김혜성 의원)
○ 우리 시가 제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을 것으로 봄. (사회복지과장)
○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수익사업이 많다. 그 수익으로도 충분히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조례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회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지원이 가능함. 이러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 경기도에서도 같은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기존에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닌 재향군인회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조례안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반대토론 내용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업무에 대한 교육 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4호
의결년월일	2008. 12. 22. (제148회)

발의년월일 : 2008. 11. 21.

발 의 자 : 김혜성 의원 등 15인

1. 제안이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향군인에 대한 의견, 유공자 표창, 위문 및 격려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 법령발췌서: 붙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제6조·제16조
- 관련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사전예고 결과: 해당없음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